

서울고등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나203167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나2031674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6. 21 선고 2022가합10589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상봉

피고, 피항소인1. B

2. C

3. D

4. E

피고 1 내지 4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헌선철

5. F

변론 종결 2024. 11. 7.

판결 선고 2024. 11. 28.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6. 21. 선고 2022가합105892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F에게, 피고 B은 제1심 판결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은 위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강동등기소 1987. 10. 28. 접수 제1369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F은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7. 7.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5~7행의 "피고 F이 2022. 10. 19. 원고의 청구를 인낙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위 답변서의 제출만으로 청구인낙으로서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부분을 "피고 F이 2022. 10. 19. 제1심 법원에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인낙합니다.'라고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인정된다. 그러나 청구의 인낙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말로 진술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20조), 당사자가 불출석하여 진술간주되는 서면에 청구의 인낙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때에는 그 취지에 따라 청구의 인낙이 성립된 것으로 보는데(같은 법 제148조 제2항), 피고 F은 위 답변서를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말로 진술한 바 없고, 위 답변서가 제1심 법원의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진술간주되었기는 하나 위 답변서에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피고 F이 위 답변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청구의 인낙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태호

판사김봉원

판사최승원